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28
----------	----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본 계획의 제출을 위한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립내용 :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나. 수립목적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으로 농촌지역인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 독거노인문제, 다문화가정 증가 등 여러 보건의료의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으로 만성질환관리, 예방적 건강관리나 건강생활의 실천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취약의 현안문제로 보건의료원이 해결해야 할 응급의학 전문의의 확보와 응급 의료체계의 역량강화, 전 군민 건강검진 수행 등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과, 평생 건강은 건강생활 실천의 행태개선이 중요하므로 비전염성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의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국가보
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하
고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함.

다. 주요사업 내용

- 응급의료체계 상 의료 취약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야간 및
휴일 등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일
한 의료 체계이며,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은 응급의료지원
기금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의료 취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
역 응급의료 기관의 운영.
- 건강검진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뇌졸중, 치매, 학교
건강검진의 확대, 말기 암환자 관리,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등의 의료체계가 요구되어 우리군은 조기 검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동출장검진 사업 추진.
- 약물 외에 비약물 치료 시스템(운동·영양·교육) 도입으로 의
료 취약환경의 극복과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
-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뇌졸중, 치매, 말기암, 순환기질
환, 호흡기질환등의 만성질환자 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요
양급 병실 운영을 위한 특수병동 설치 추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방역관리 사업
을 추진하여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
- 위 사업 등과 함께 지역보건법 제9조의 모든 업무 수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1항(별첨)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관계부처 승인 : 해당 없음
- 붙임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별송

※ 관계법령

地域保健法

第3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등)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地域住民,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 및 專門家の 의견을 들어 당해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郡·區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